

진행순서

● 제 1부 (15:00~15:10)

□ 개회사 : 육 동 일(대전발전연구원장)

(장소정돈)

● 제 2부

○ 발 표 (15:10~16:40)

□ 사 회 : 이 창 기(대전개발위원회 시민정책연구소장)

□ 발제Ⅰ : 대전의 경제비전 설정을 위한 지역산업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박 종 찬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 발제Ⅱ : 국내외 환경변화와 대전경제의 혁신전략
김 태 헌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발제Ⅲ : 남북경협활성화가 지방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전망
윤 기 관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무역학부 무역전공 교수)

○ 휴 식 (16:40~16:50)

○ 토 론 (16:50~17:20)

□ 토론자 : 김 재 경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류 덕 위 (한밭대학교 경상학부 경제학전공 교수)

이 석 봉 (대덕넷 대표)

한 형 우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장)

○ 질의응답 (17:20~17:30)

○ 정리 및 폐회

목 차

- 대전의 경제비전 설정을 위한 지역산업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1
박 중 찬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 국내외 환경변화와 대전경제의 혁신전략 ----- 23
김 태 현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남북경협활성화가 지방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전망 ---- 43
윤 기 관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무역학부 무역전공 교수)

발제 I

대전의 경제비전 설정을 위한
지역산업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박 종 찬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대전의 경제비전 설정을 위한 지역산업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박 중 찬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1. 서 론

- 대전경제는 지난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내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왔다.
-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1인당 GRDP를 기준으로 분석한 지역소득격차지수¹⁾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1990년에 109.8로 전국에서 경기, 인천, 경남 그리고 서울에 이어 5위를 기록했으나, 2004년에는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위를 기록하여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쇠락해왔음을 알 수 있다.

<표 1> 지역소득격차지수 (2000년 기준가격)

1990년		순위	2004년	
지수	지역		지수	지역
122.1	경기	1위	144.1	충남
117.3	인천	2위	141.9	경남
117.1	경남	3위	136.0	경북
115.4	서울	4위	115.5	전남
109.8	대전	5위	112.4	충북
107.9	경북	6위	111.1	서울
101.7	충남	7위	99.9	경기
96.3	강원	8위	88.5	인천
94.7	광주	9위	88.3	강원
94.4	충북	10위	84.9	전북
89.5	전남	11위	82.5	제주
86.5	제주	12위	79.5	대전
86.2	대구	13위	79.3	부산
83.0	부산	14위	74.0	광주
78.1	전북	15위	62.1	대구

허문구, “지역간 소득격차의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분석, 2006.

1)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총생산) : 지역내총생산물의 전국평균을 100으로 할 때 각 지역의 지수를 나타냄

- 반면에, 같은 기간 인접한 충청남도의 지역경제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 7위에서 1위로 그것도 지수 상으로는 대전의 79.5의 두 배에 가까운 144.1을 기록해 지역경제가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대전경제의 침체는 대전의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고용의 악화를 초래해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전경제는 1995년에서 2004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성장률이 충남의 6%에 비해 떨어지는 3.7%를 기록했다.
 - 문제는 이러한 대전 지역경제 지표의 하락세가 2004년 이후에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 2〉 대전·충남지역 경제성장률 및 고용상황 추이(%)

	1995	2000	2003	2004	95~04(연평균)
경제성장률(GRDP)					
대전	2.1	7.4	7.3	1.6	3.7
충남	-1.1	7.9	7.5	9.2	6.0
(전국)	7.7	8.1	(3.3)	(5.0)	(4.5)
취업자수 증감률					
대전	6.9	6.0	-0.5	1.5	2.8
충남	-0.6	1.9	-0.6	2.0	0.6
(전국)	2.9	4.3	(-0.1)	(1.9)	(1.3)

- 취업자수 면에서도 2000년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최근에 대전 지역 고용문제의 심각성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전의 15세 이상 인구대비 취업자수를 계산한 고용률은 2006년에는 당년도 3/4분기에 전국평균 59.7%에 못미치는 56.1%를 기록하였다.

〈표 3〉 대전·충남지역 고용률1) 추이(%)

	1995	2000	2006 ²⁾	95~00	01~06	95~06
대전·충남	60.4	58.4	60.6	59.0	60.1	59.6
대전	56.1	54.8	56.1	54.8	57.0	55.9
충남	63.5	61.1	64.0	61.9	62.5	62.2
(전국)	(60.6)	(58.5)	(59.7)	(59.0)	(59.6)	(59.3)

주 : 1) 15세이상인구 대비 취업자수

2) 1~9월중

- 안타까운 점은 인접한 충남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데 대전은 상대적으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다. 충남지역이 1995-2006년중 62.2%로 전국수준(59.3%)을 크게 상회한 반면 대전지역은 55.9%에 그치고 있다.
- 결론적으로 대전 지역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경제의 발전 그리고 경부고속철도의 개통과 호남선 고속철도의 예정 그리고 도로망의 확충 등으로 시장의 범위(Market boundary)는 확대되어 전형적인 소비도시인 대전의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 구매를 하고, 서울에 가서 소비를 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 지역경제는 규모의 특성상 민간부문의 시장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여 경제 스스로 생동력을 갖고 굴러가기보다는, 공공부문이 지역의 미래 경제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을 구체적 지역산업정책을 통해 구현할 때 활기를 찾고 효율적으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경제 비전제시와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 특히, 대전과 같이 경제 규모가 작고 금융체계 및 대기업 등 기업 활동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경제가 왜 이렇게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의 미래 지역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대전 지역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첫째,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경제의 현황을 분석한다.
 - 다음으로 대전 지역경제의 현황과 산업구조 분석 그리고 대전과 인접하

고 있으면서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는 충남의 지역경제를 비교해 봄으로써 대전 경제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 마지막으로, 앞의 대전 지역경제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대전 경제의 미래 비전 설정을 위한 지역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및 한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2.1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 세계화 및 지역화의 급진전

- 1990년대 이후 WTO의 출범, FTA의 확산 등으로 세계경제의 통합 및 각국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외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디지털化·네트워크化되면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IT뿐만 아니라 BT·NT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으며, 신기술간 융합화 현상이 심화

○ 'Chindia'의 경제력 확대

- 중국·인도는 우리 경제의 경쟁상대로서 위협요인이기도 하지만 방대한 인구를 가진 대규모 시장이기도 함. 따라서 우리 경제 활력의 기회요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 대두

○ 고령화의 세계적 추세

-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미국은 2014년경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도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후 2019년경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2.2 한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성장잠재력 둔화

○ 생산요소 투입위주의 성장 한계에 직면

- 우리 경제는 1997년말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급속한 경제회복을 이룩하였으나, 2000년 이후 성장률은 4%대의 낮은 수준을 지속
- 노동투입 증가율이 생산가능인구증가율 둔화, 근로시간 단축 등에 영향을 받아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외환위기 이후 투자부진 지속으로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를 노정

〈표 4〉 성장요인별 증가율 (단위: %)

		1971-1980	1981-1990	1991-2000 (1991-1995)	2001-2004
경제 전체	GDP	7.0	8.4	5.9(7.5)	4.5
	자본	13.0	10.8	10.6(12.5)	5.4
	노동	3.5	2.1	1.4(2.2)	0.6
	총요소생산성	0.5	3.9	2.1(2.4)	2.5

- 향후에도 고령화추세의 확대, 과거와 같은 높은 투자확대의 어려움 등으로 성장에 있어 생산요소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혁신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외환위기 이후 기업가정신 위축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의 경영행태가 위험부담을 기피하는 보수적인 경영행태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설비투자의 부진 지속

2) 부문간 불균형 성장

(1) 산업간 불균형 성장

○ 생산성 격차에 기인한 제조업·서비스업간 불균형

- 1990년 이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8.7%의 높은 수준을 나타낸 반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1.4% 증가하는 데 그침.

<표 5> 제조업·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율 (단위: %)

	1971-1980		1981-1990		1991-2004 (2001-2004)	
	노동	총요소	노동	총요소	노동	총요소
제조업	6.8	-	6.4	4.0	8.7(6.6)	5.3(5.3)
서비스업	1.2	-	2.7	1.8	1.4(1.0)	0.0(0.5)
경제전체	3.2	-	5.5	3.9	3.8(3.0)	2.1(2.5)

-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
-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산업의 비중('04년): 미국 76.5%('03년), 프랑스 75.8%, 독일 69.8%, 일본 69.6%('03년), 한국 55.5%

(2) 기업간 불균형 성장

○ 중소기업 혁신역량 미흡 등에 따른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균형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혁신역량 강화가 미흡한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격차 지속

○ 부품소재업체 영세성에 기인한 최종재·부품소재기업간 불균형

- 부품·소재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의 기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의 부족 등으로 대외의존도 심화, 이로 인해 부품·소재산업의 대일 무역적자는 2005년 162억 달러에 달함.

(3) 지역간 불균형 성장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추진

- 수도권과 비교하여 비수도권의 발전 및 혁신역량이 매우 취약, 지역내 총생산 중 수도권 비중은 2003년 48.6%에 달하고, 대기업 본사, R&D, 연구개발, 연구개발기관 등이 수도권에 집중
-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지방의 전략산업 육성, 신활력지역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반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균형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 균형발전시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균형발전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기업의 설비투자액 중 지방의 비중은 2001년 51.7%를 기점으로 2002년 55.3%, 2003년 56.9%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3. 일자리창출 미흡

○ 고용측면의 탈제조업화

- 1990년대 들어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에도 지속, 이에 따라 경제전체의 고용증가율은 미흡

〈표 6〉 제조업·서비스업의 고용비중 및 고용증감 변화

	고용비중(%)				연평균 고용증감(만명)		
	1980	1990	2000	2005	1981-1990	1991-2000	2001-2005
경제전체	100.0	100.0	100.0	100.0	44.0	30.7	34.0
제조업	21.6	27.2	20.3	18.5	19.6	-6.2	-1.2
서비스업	37.0	46.7	61.3	65.2	33.8	45.2	38.9

○ 여성의 고용기회 부족 및 청년실업 문제 대두

- 한편, 우리나라의 실업률(2005년 3.7%)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고용률은 여성의 고용기회 미흡 등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
- 2004년기준 고용률(생산가능인구/여성) : 한국(63.6/52.2%), 미국(71.2/65.4%), 일본(68.7/57.4%), EU15개국(65.0/57.17%)
-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반면, 청년실업은 증가하는 등 인력수급상의 불일치 현상 지속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 ('01) 3.98 → ('03) 6.32 → ('04) 5.31
- 청년(15-29세) 실업률 : 2005년 8.0%

○ 산업인력의 수급 불균형 지속

-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오고 있는 제조업 부문은 대부분 기능직 인력 부족과 고령화의 문제에 직면
- 제조업 부문의 총부족인원은 8만3천명, 제조업 부문(1차금속)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7.8세(41.1세)
-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는 산업기술인력 또한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양적·질적 불균형 현상 지속
- 우리나라 공학사의 수는 2002년 65,522명으로 미국(65,113명)보다 다소 많지만,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은 2002년의 경우 16.2%로 OECD 국가중 최하위임.

○ 노동시장내 양극화 심화

- 급속한 세계화·정보화추세에 직면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미흡한 가운데,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
- 대립적 노사관계 및 비합리적 제도·관행 등의 부담요인 잔존,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화, 비정규직의 차별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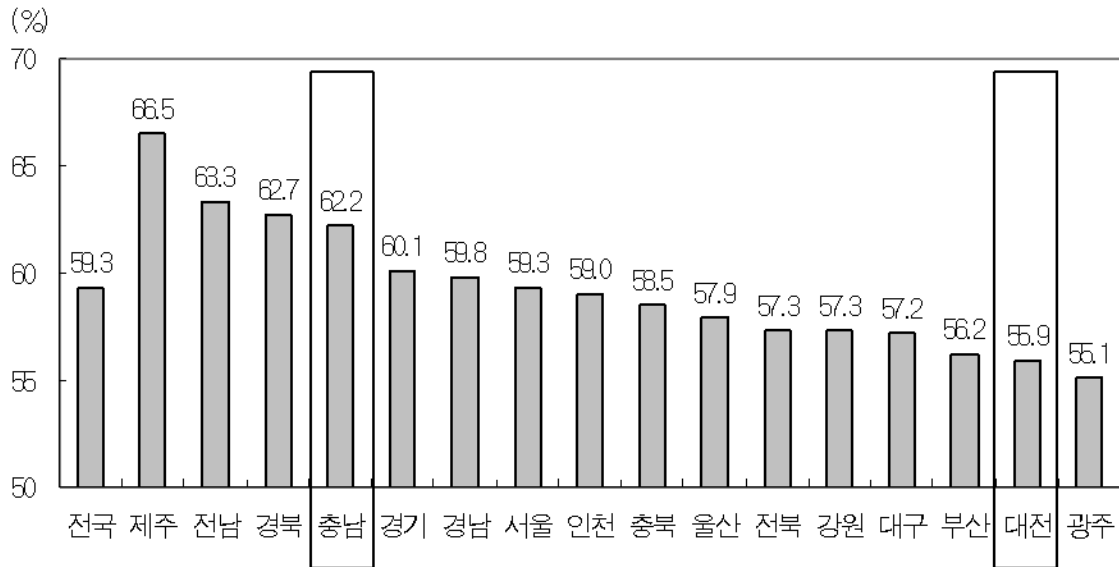
3. 대전경제의 현황, 산업구조 및 문제점

3.1 대전경제의 일반현황

- 서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대전경제는 지난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국내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침체를 지속해 오고 있다.
 - 1인당 GRDP를 기준으로 분석한 지역소득격차지수²⁾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1990년에 109.8로 전국에서 경기, 인천, 경남 그리고 서울에 이어 5위를 기록했으나, 2004년에는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위를 기록하여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쇠락해왔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대전경제의 침체는 대전의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고용의 악화를 초래해 경제침체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 대전경제는 1995년에서 2004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의 연평균성장률 4.5%에 비해 떨어지는 3.7%를 기록했다.
 - 문제는 이러한 대전 지역경제 지표의 하락세가 2004년 이후에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 취업자수 면에서도 2000년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최근에 지역의 고용문제의 심각성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전의 15세 이상 인구대비 취업자수를 계산한 고용률은 2006년에는 당년도 3/4분기에 전국평균 59.7%에 못미치는 56.1%를 기록하였다.
 - 안타까운 점은 인접한 충남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데 대전은 상대적으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다. 충남지역이 1995-2006년중 62.2%로 전국수준(59.3%)을 크게 상회한 반면 대전지역은 55.9%에 그치고 있다.

2)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총생산) : 지역내총생산물의 전국평균을 100으로 할 때 각 지역의 지수를 나타냄

<표 7> 시도별 고용률(95~06 평균)



○ 이 결과 실업률 동향을 보면, 대전의 경우 실업률(청년실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고 증가추세임.

<표 8> 대전지역의 경제활동인구 상태별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청년실업률)
대전	2002	1,095	667	642	26	60.9	3.9 (7.8)
	2003	1,113	664	639	26	59.7	3.8 (7.0)
	2004	1,133	677	649	28	59.7	4.2 (9.3)
	2005	1,154	676	646	30	58.6	4.4 (9.2)
충남	2002	1,459	933	908	25	63.9	2.7 (7.2)
	2003	1,457	929	902	27	63.7	2.9 (7.6)
	2004	1,458	942	921	21	64.6	2.3 (6.5)
	2005	1,485	956	931	25	64.4	2.6 (7.6)
광역시	2002	17,857	10,984	10,538	448	61.5	4.1 (8.1)
	2003	17,922	10,866	10,392	474	60.6	4.4 (8.9)
	2004	17,999	11,040	10,548	492	61.3	4.5 (9.0)
	2005	18,196	11,157	10,652	505	61.3	4.5 (8.8)
전국	2002	36,963	22,921	22,169	752	62.0	3.3 (7.0)
	2003	37,340	229,57	22,139	818	61.5	3.6 (8.0)
	2004	37,717	23,417	22,557	860	62.1	3.7 (8.3)
	2005	38,300	23,743	22,856	887	62.0	3.7 (8.0)

* 자료: 통계청, KOSIS.

* 청년층 실업률은 15-29세 연령층의 실업률

- 그러나 취업자 구성비 동향을 보면, 대전의 경우 취업자는 30-54세 구간이 많은 편으로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성장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9〉연령별 취업자 구성비 단위: 천명, (%)

	연도	취업자 총수	연령별 취업자		
			15-29세	30-54세	55세 이상
대전	2002	642 (100.0)	154(24.0)	418 (65.1)	70 (10.9)
	2003	639 (100.0)	150 (23.5)	423 (66.2)	66 (10.30)
	2004	649 (100.0)	144 (22.2)	433 (66.8)	72 (11.0)
	2005	646 (100.0)	138 (21.3)	435 (67.3)	74 (11.4)
충남	2002	908 (100.0)	168 (18.5)	507 (55.8)	233 (25.7)
	2003	902 (100.0)	157 (17.4)	517 (57.3)	228 (25.3)
	2004	921 (100.0)	157 (17.1)	530 (57.5)	234 (25.4)
	2005	931 (100.0)	147 (15.6)	540 (58.0)	244 (26.2)
광역시	2002	10,538 (100.0)	2,509 (23.8)	6,727 (63.8)	1,302 (12.4)
	2003	10,392 (100.0)	2,379 (22.9)	6,728 (64.7)	1,285 (12.4)
	2004	10,548 (100.0)	2,348 (22.3)	6,818 (64.6)	1,382 (13.1)
	2005	10,652 (100.0)	2,271 (21.3)	6,925 (65.0)	1,456 (13.7)
전국	2002	22,169 (100.0)	4,799(21.7)	13,863 (62.5)	3,507 (15.8)
	2003	22,139 (100.0)	4,606 (20.8)	14,052 (63.5)	3,481 (15.7)
	2004	22,557 (100.0)	4,578 (20.3)	14,316 (63.5)	3,662 (16.2)
	2005	22,856 (100.0)	4,450 (19.5)	14,557 (63.7)	3,850 (16.8)

※ 자료: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 미래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를 예측할 수 있는 설비투자율 추이에서도 대전은 충남이나 수도권에 비해 설비투자가 저조한 점이 문제이다.
 - 설비투자율은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에는 전국평균 9.1% 보다도 낮고 충남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시민들에게 대전경제의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표 10〉 지역별 설비투자율 추이

	1995	2000	2004	1990년대 평균 (1995~1997): A	2000년대 평균 (2000~2004): B	평균차이 (B-A)
서울	9.1	9.1	4.8	8.0	6.8	-1.2
부산	11.8	14.3	9.8	11.4	11.4	0.0
대구	10.3	9.2	7.1	9.0	7.3	-1.6
인천	12.6	13.3	11.3	13.7	13.1	-0.6
광주	9.6	11.3	7.7	9.5	8.2	-1.4
대전	10.8	8.4	5.2	9.4	6.6	-2.8
울산	-	15.5	9.1	-	11.1	-
경기	16.0	14.7	11.3	14.9	12.3	-2.6
강원	13.4	7.8	5.5	12.0	6.7	-5.3
충북	20.2	12.1	12.1	19.5	11.8	-7.7
충남	19.2	17.4	15.0	17.6	15.4	-2.3
전북	17.1	8.6	7.5	15.5	7.9	-7.6
전남	15.7	18.0	8.9	18.0	12.3	-5.7
경북	19.3	16.2	14.3	18.0	15.1	-2.9
경남	18.8	12.2	9.8	17.8	10.9	-6.9
제주	8.0	7.9	5.8	7.5	6.9	-0.6
전국	14.0	12.6	9.1	13.3	10.4	-2.9
수도권	12.0	11.7	8.1	11.2	9.7	-1.5
비수도권	15.8	13.3	10.1	15.1	11.1	-4.0

자료: 박재곤, “지방투자 추이분석과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2006.

설비투자율=설비투자액/지역내총생산(%)

- 결론적으로 대전 지역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설비투자율도 저조하여 미래 대전경제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3.2 대전의 산업구조

○ 대전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동향을 보면, 3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그 가운데도 경기침체에 직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의 비중이 높다.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서비스업)의 비중이 2005년도 기준으로 약 85.8%로 전국평균 73.5%보다 약 12%정도 높다.
- 반면에, 제조업은 전국평균보다 약 6% 정도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전형적 소비도시의 산업구조는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어 경기가 하락기에 들어설 때 경기침체의 영향을 크게 빨리 받는 반면,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경기상승의 영향을 더디게 작게 받는 단점이 있다.

<표 11>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단위 : 천명, %)

	취업자총수 (비중)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전기, 운수, 통신, 금융		
대전	2002	642 (100.0)	12 (1.9)	83 (12.9)	548 (85.4)	60 (9.3)	210 (32.7)	209 (32.6)	69 (10.7)
	2003	639 (100.0)	9 (1.5)	82 (12.8)	548 (85.7)	68 (10.6)	187 (29.3)	219 (34.3)	75 (11.7)
	2004	649 (100.0)	10 (1.5)	80 (12.4)	558 (86.1)	64 (9.8)	189 (29.1)	230 (35.5)	76 (11.7)
	2005	646 (100.0)	11 (1.7)	81 (12.5)	554 (85.8)	59 (9.1)	175 (27.1)	242 (37.5)	78(12.1)
충남	2002	908 (100.0)	261 (28.7)	141 (15.5)	506 (55.7)	60 (6.6)	186 (20.5)	189 (20.8)	72 (7.9)
	2003	902 (100.0)	234 (26.0)	146 (16.2)	522 (57.9)	63 (7.0)	200 (22.2)	191 (21.2)	68 (7.5)
	2004	921 (100.0)	222 (24.1)	155 (16.8)	544 (59.1)	64 (7.0)	197 (21.4)	215 (23.4)	69 (7.5)
	2005	931 (100.0)	220 (23.6)	148 (15.9)	563 (60.5)	57 (6.1)	196 (21.1)	240 (25.8)	70 (7.5)
광역시	2002	10,538 (100.0)	133 (1.3)	2,160 (20.5)	8,245 (78.2)	859 (8.2)	3,206 (30.4)	3,080 (29.2)	1,100 (10.4)
	2003	10,392 (100.0)	134 (1.3)	2,031 (19.5)	8,227 (79.2)	902 (8.7)	3,087 (29.7)	3,122 (30.0)	1,116 (10.7)
	2004	10,548 (100.0)	133 (1.3)	2,046 (19.4)	8,369 (79.3)	901 (8.5)	3,044 (28.9)	3,288 (31.2)	1,136 (10.8)
	2005	10,652 (100.0)	126 (1.2)	2,024 (19.0)	8,501 (79.8)	891 (8.4)	3,013 (28.3)	3,450 (32.4)	1,148 (10.8)
전국	2002	22,169 (100.0)	2,069 (9.3)	4,259 (19.2)	15,841 (71.5)	1,746 (7.9)	5,998 (27.1)	5,940 (26.8)	2,157 (9.7)
	2003	22,139 (100.0)	1,950 (8.8)	4,222 (19.1)	15,967 (72.1)	1,816 (8.2)	5,852 (26.4)	6,139 (27.7)	2,160 (9.8)
	2004	22,557 (100.0)	1,825 (8.1)	4,306 (19.1)	16,427 (72.8)	1,820 (8.1)	5,862 (26.0)	6,558 (29.1)	2,187 (9.7)
	2005	22,856 (100.0)	1,815 (7.9)	4,251 (18.6)	16,789 (73.5)	1,814 (7.9)	5,806 (25.4)	6,923 (30.3)	2,24 (9.8)

※자료: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3.3 대전경제의 문제점

- 앞의 분석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대전경제 침체의 원인은 대전의 취약한 산업구조에 있다고 본다.
- 특히, 대전경제는 소비와 생산 면에서 타지역과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개방형 경제구조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 이러한 개방형 경제구조 하에서, 디지털경제의 발전, 물류유통망의 확충과 고속철도 및 도로의 확충은 대전의 소비를 서울 등 수도권에 더욱 의존하게 되어 지역의 부를 외부로 더 많이 더 빠르게 유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돈을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제조업 등 생산측면은 비중이 취약한 반면, 디지털경제의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와 교통의 발달에 따른 물류유통의 발달은 소비도시의 개방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대전경제의 돈을 외부로 과거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 대전경제 발전을 위한 신산업정책 방향

- 대전의 경제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산업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통농업 도에서 최첨단 산업도로 변모시켜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급속한 경제발전이룩하고 있는 충청남도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충남 산업구조 변화추이('95→2005년, 부가가치 기준)를 보면, 농림어업(14.1→7.3%), 광공업(28→45.0%), 서비스업(57.9→47.7%) 으로 10년 동안에 광공업 중심으로 구조 전환을 하였다.

〈표 12〉 충남의 산업구조 변화 (단위 : %, 구성비, 당해년도 기초가격)

구분	충남			전국		
	농림 어업	광업 및 제조업	서비스 및 기타	농림 어업	광업 및 제조업	서비스 및 기타
2004	8.7	41.8	49.5	3.5	28.7	67.8
2003	8.9	40.1	51.1	3.6	26.5	69.9
2002	10.1	39.7	50.2	3.9	27.0	69.1
2001	11.6	37.6	50.8	4.3	27.6	68.1

- 이 결과, 충청남도의 제조업체는 ('95) 3,906 → ('06) 6,200업체(2,294 업체 증), 산업단지는 ('95) 2,066만평 → ('06) 2,788만평(34.9% 증), 1인당GRDP는 ('95) 971만원 → ('05) 2,455만원(152.8% 증), 수출은 ('95) 116억\$ → ('06) 390억\$(274억\$ 증), 외자유치는 ('95) 2.2억\$ → ('06) 67억\$(64.8억\$ 증), 그리고 무역수지는 ('95) 67억\$ → ('06) 171억\$ (2.6배)로 증가하였다.

〈표 13〉 지표로 본 충남의 지난 10년 변화 모습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8월
1인당 GDP	충남	15,412	16,524	18,386	20,871	22,980	-	-
	전국	12,295	13,112	14,406	15,290	16,355	-	-
산업생산	충남	100.0	101.1	115.2	135.6	169.9	197.8	228.8
	전국	100.0	100.7	108.8	114.5	126.2	134.1	136.7
수출	충남	170	117	152	198	293	335	246
	전국	1,723	1,504	1,625	1,938	2,538	2,844	2,087
실업률	충남	2.8	2.9	2.7	2.9	2.3	2.6	2.2
	전국	4.4	4.0	3.3	3.6	3.7	3.7	3.4
소비자물가	충남	0.9	3.6	2.1	3.6	3.9	3.2	3.0
	전국	2.3	4.1	2.7	3.6	3.6	2.7	2.4
어음부도율	충남	0.20	0.28	0.15	0.11	0.09	0.06	0.05
	전국	0.26	0.23	0.06	0.08	0.06	0.04	0.03

- 결론적으로 인접한 충남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벤치마킹해 볼 때 대전경제 발전을 위한 신산업정책의 방향은 대전지역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첨단제조업 육성으로 제조업의 비중을 늘리고, 고용창출을 위해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및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및 국외의 시장을 판매 시장으로 하는 역외시장산업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그 소득이 지역을 시장으로 하는 역내시장제품에 소비되어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러나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대전은 소비중심의 지역산업구조, 디지털경제 및 물류교통의 발달로 인해 임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역외로 급속히 흘러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
- 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요소는 자본, 노동 그리고 기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 등이 있다.
- 2장의 한국경제 분석에서 본 것처럼 한국경제는 이제 노동의 증가에 의한 성장은 끝이 났고, 자본 투입의 증가에 의한 성장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 따라서 향후 5년, 아니 10년 후 대전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도 노동의 증가, 자본의 증가 보다는 생산성 증가를 통한 성장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이러한 산업은 외부로부터 소득을 지역경제 내로 끌어 들이는 산업이 되어야 될 것이다.
-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면에서 대전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 대전의 경우 기초투자환경, 정보화, 기술 환경, 인프라 사업 환경 그리고 지방정부 정책 환경 등에서 우수한 여건을 갖고 있다.

〈표 14〉 기업투자환경 종합지수

	기초투자 환경		정보화·기술 환경		인프라·사업 환경		지방정부 정책환경		종합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시	0.1597	3	0.1901	1	0.2245	1	0.0697	11	0.6440	1
부산시	0.1580	4	0.0843	4	0.1763	2	0.0922	6	0.5108	4
대구시	0.1476	9	0.0719	6	0.1307	7	0.0663	12	0.4165	7
인천시	0.1548	5	0.0833	5	0.1576	3	0.1114	2	0.5071	5
광주시	0.1385	10	0.0659	7	0.1191	9	0.0915	7	0.4150	8
대전시	0.1633	2	0.1501	2	0.1409	5	0.1057	3	0.5600	2
울산시	0.1509	6	0.0553	9	0.1413	4	0.0643	13	0.4118	9
경기도	0.1712	1	0.1194	3	0.1384	6	0.0961	5	0.5251	3
강원도	0.1285	13	0.0292	14	0.0567	16	0.0734	10	0.2878	16
충청북도	0.1329	12	0.0437	11	0.0741	15	0.0628	14	0.3135	14
충청남도	0.1500	7	0.0514	10	0.0924	12	0.1126	1	0.4064	10
전라북도	0.1100	16	0.0344	13	0.0850	14	0.0587	15	0.2881	15
전라남도	0.1280	14	0.0212	16	0.0908	13	0.0802	9	0.3202	13
경상북도	0.1483	8	0.0358	12	0.1039	11	0.0545	16	0.3425	12
경상남도	0.1359	11	0.0626	8	0.1274	8	0.0909	8	0.4168	6
제주도	0.1276	15	0.0239	15	0.1094	10	0.1051	4	0.3660	11

자료: 이병기,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

○ 따라서 대전의 지역산업정책 방향은 자본의 유치를 생산성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대전경제 발전을 위한 신산업정책의 목표 및 전략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 및 자본 투입 위주의 공장 설립에 의한 대전 경제의 성장은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성 높은 발전이 가능한 신기술산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

- 이런 점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중요한 자산이다.
- 혁신주도형 성장은 연구개발투자와 그 성과에 좌우되므로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이를 생산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지식부가서비스 산업의 육성으로 선진형 산업구조로 고도화해야 10년 후 대전경제가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선순환의 바탕이 될 것이다.
- 의료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산업이 동시에 가능한 지역으로 온천관광지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유성온천 지역을 온천의료관광특구로 재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대전광역시, 『대전 신경제발전 5개년 계획 : 2003~2007』, 2002.
-----, 『대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 2005~2009』, 2004.
대전발전연구원, 『대덕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2005.
배진한, “대전·충남지역의 일자리창출 정책방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06
산업연구원(2004), “21세기 충남산업의 발전전략과 과제”
산업연구원(2003), 지식기반산업의 지역별 발전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2006.3), “질 좋은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
산업자원부(2003), 차세대 성장발전전략
산업자원부(2006.3), “질 좋은 성장 추진전략”
최효철, “대전·충남지역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성,”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06
충청남도(1999), 21세기 충청남도 지식산업 육성방안
충청남도(1999), 21세기를 향한 산업진흥5개년계획안
충청남도(2002), 「충남통계연보」
충청남도(2004),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충남지역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4. 12.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대전·충남지역 벤처기업 현황과 정책대응 방향,” 2005. 3.

발제 Ⅱ

국내외 환경변화와 대전경제의 혁신전략

김 태 현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발제 Ⅲ

남북경협활성화가 지방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전망

윤 기 관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무역학부 무역전공 교수

남북경협활성화가 지방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전망

윤 기 관(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무역학부 무역전공 교수)

I. 문제의 제기

1. 연구 배경

- 통일의 목적 : 남북한(한민족)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의 영위
- 목적달성의 수단 : 한반도통일(1국가, 1정부)보다는 3통(통행, 통신, 통관)의 자유로운 보장이면 족함 ==> 인위적인 통일보다는 자연스러운 통일이 더 바람직함
- 통일비용의 종류 : 물리적 통일비용과 사회적 통일비용³⁾

<통일의 물리적 비용 : Physical Cost of Reunification>

- 북한의 경제수준을 남한의 일정 수준(60%, 70%, 80% 등)으로 끌어올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추산 결과 수조달러로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임)
- 북한경제가 나아지도록 경제지원하고, 되도록이면 천천히 통일해야 한다는 결론 도출 가능

<통일의 사회적 비용 : Social Cost of Reunification>

- 분단 60년의 세월동안 더욱 달라져 가는 언어, 사상, 관습, 문화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심해지는 이질감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
- 추산하기도 어렵지만, 물리적 비용 못지않게 막대한 비용의 소요가 예상됨
- 이 비용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더욱 증대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속히 통일해야 한다는 결론 도출이 가능함

3) 윤기관, "남북한 경협 성공조건과 실천방안 : 경제-무역적 접근",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 2003.12, pp.241-242

<남북경제 및 사회 교류와 협력과 통일비용간의 관계>

- 남북경제 교류와 협력 ==> 북한과의 물자교류 및 남북한 투자협력 사업
==> 통일의 물리적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
- 남북사회 교류와 협력 ==> 이산가족상봉, 남북단일팀구성, 아시안게임시 북한
여대생응원단 초청, 북한청소년축구팀 초청,
새터민지원사업 등
==> 통일의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

2. 연구 목적

- 개성공단사업==> 남북한 및 동북아 평화정착사업, 한반도 통일비용축소사업
- 새터민정책사업 ==> 통일의 사회적 비용축소 사업의 일환임
- 남북경제교류와 협력의 20년 활동을 검토하여 협력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 제시

II. 남북경협외의 목적과 기본 원칙

1. 목 적

- 1) 한국의 「남북교류협력」, 「남북관계발전법」 「개성공단지원에관한법률」 및
북한의 「북남경제협력법」에 근거
 - WIN-WIN(相生)(상호이득 = 전민족의 이익)
 - 북한의 이득 : 국가 외화획득과 노동자 기술습득(학습효과)
 - 국제사회의 동참과 개혁·개방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한 여건 조성
 - 남한의 이득 : 중소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수익성 증대
 - 샌드위치 혹은 크래커넛에 걸려있는 한국경제 그리고 12년째 1인당 국민
소득 10,000달러 박스권 및 GDP규모 12위 박스권에 갇혀 있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 계기 마련과 진정한 선진국 경제권 진입 모색
 - 남북한 경제력 격차 축소
 - 남북한 불균형적인 발전 상태를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
 - * 북한경제규모 = 남한경제규모의 1/26

- * 북한 1인당 국민소득 = 남한 1인당 국민소득의 1/13
 - * 북한인구(2300만명), 남한인구(5000만명)
 - 성장동력(Growth Engine)을 상실한 북한경제의 회복과 플러스성장 지속
 - * 북한은 1990년부터 1990년까지 9년간 마이너스 성장 후 남한과 국제 사회의 지원으로 플러스성장으로 전환
 - * 북한은 자력으로는 경제성장 한계 직면(자본, 노동, 기술 등 생산요소 절대부족)
 - 통일의 물리적 및 사회적 비용 축소
- 남북한(한반도) 평화와 번영 달성 : “싸우지 않고(평화), 보다 더 잘 살자(번영)”
 - 남북한(한반도)의 자연스런 평화적 통일 성취 초석

2. 기본원칙

- 정치와 경제의 상호 분리
 - 정치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
 - 경제문제는 경제적으로 해결
 - 원칙 : 정치와 경제를 상호 연결시키지 않음⁴⁾
 - * 원칙이 예외를 압도하는 사회를 건설하자
- 시장경제 준수
 - 남북경협은 지속성, 안정성, 경제성,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함으로 경제 논리와 시장논리에 일임함
 - * 사회주의국가의 소비자나 자본주의국가 소비자나 소비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영리한 시장경제 추종자요 동시에 준수자임
 - * 소비자는 시장에서 저렴하고, 품질과 디자인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타고난 속성 소유
- 비교우위론(유무상통)에 입각
 - 남북한의 상호 부족한 부문을 상호 보완 협력하여 경제의 시너지효과를 누리도록 함
 - 북한이 주장하는 ‘유무상통’ 이란 곧 ‘비교우위원리’ 에 입각하는 자유무역원리임
 - 북한 : 유(자원과 노동력) 무(기술과 자본)
 - 남한 : 유(자본과 기술) 무(자원과 노동력)

4) 이에 대한 독일의 경험이 우리 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은, 황병덕,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8, 제Ⅱ장 참조

III. 남북경협 20년(1988-2007)의 개관과 평가

1. 개 관

-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은 1947년부터 시작함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은 1962년부터 시작함
중국의 경제개발계획은 1953년부터 시작함
- 북한의 1인당국민소득은 1975년까지 남한보다 앞섰음
현재 북한의 총GDP와 1인당 GDP는 남한의 1/32배와 1/16 수준임
- 북한경제는 1990년부터 9년간(19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
* 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플러스성장 중임
- 북한경제 3난 : 식량난⁵⁾, 에너지난, 전력난은 여전히 심각함
-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先경제後정치·외교전략)의 성공을 북한에게도 적용할 것을 천명(1988년 7월 7일, 소위 「7.7선언」) --> 이어서 당시 라웅배 경제부총리의 대북경제개방 조치 선언(1988년 10월 7일)
- 남북경제교류(물자반출입)시작 --> (물물교환에 의한 대금결제에 한계 직면함) --> 임가공방식 도입(1992) -->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국내 임금상승 추세를 탈피하기 위하여 임금이 저렴한 동남아도 공장이전 붐) --> (이러한 시기에 언어와 물류비용측면에서 유리한 대북한투자 분위기 조성) --> 남북경협(자본투자) --> 남북사회문화교류와 협력으로 발전
- 20년간의 경제협력
 - 인적교류 : 북한 방문 276,967명+남한 방문 6,113명 = 총 283,080명)
 - 남북교역(물자반출입) : 반입 35억달러, 반출 30억달러 =총 65억달러)
 - 위탁가공(임가공) : 반입 10억달러 + 반출 7억달러 = 총 17억달러
 - 협력사업: (협력사업자 승인)경제 138개사 + 사회문화 132개사 =270
(협력사업 승인) 경제 109건 + 134건 = 243건
 - 개성공단(2004-2007): 반입 1억달러 + 반출 4.4억달러 = 5.4억달러
 - 무상지원(1995-2007):정부(11억달러) + 민간(5.5억달러)= 16.5억달러

5) 이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윤기환, 「남북한 무역경제연구」, 충남대학교 출판부, 1999, pp.175~182 참조

2. 평 가

○ 남북경제교류(물자교류)

- 직접교류보다 간접교류 중심

==> 비경제적(중개료 이중부담 등)

==> 남북 직접교류 기대

- 대금결제(물물교환)측면에서의 한계 직면

==>청산결제, 경화결제 기대

* 청산결제 : 이미 합의한 상태임(실현이 되지 않고 있음)

○ 남북경제협력(투자)

- 남북경협 모델설정기준

(1) 경제성, 확장성(파급성), 공공성, 외부효과 등을 갖추어야 하고,

(2) 생산기지화, 비교우위 활용가능, 특정지역집중투자 효과,

(3) 공기업과 정부 역할의 확대 가능 등을 갖추어야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가능함⁶⁾ ==> 이러한 면에서 보면 개성공단은 적절한 남북경협의 장임에 틀림이 없음

- 그러나 현실은

(1) 남한의 대북한 일방적 투자 위주이며,

(2) 대북투자 리스크상존 하고,

(3) 북한의 대남한 투자 병행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4) 성공모델이 적음

(개성공단에서도 신원정도에 그침)

(성공모델을 다수 창출 기대)

(제2의 개성공단과 제2의 신원이 탄생되어야 함)

○ 개성공단 3년 실험의 평가

<개성공단사업의 상징>

- 남북한 상생의 경제사업⁷⁾

- 평화피오기사업(화해와 평화정착화 사업)

6) 최수영, "남북경협의 바람직한 모델과 개성공단", 국회 북한-통일 모임, 「변화하는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2005, pp.59-66

7) 통일부, 「개성공단 길라잡이」, 2007.4, pp.4-5

<개성공단 사업 개요>

- 총 20,000평
 - * 공단 800만평, 생활구역/상업구역/관광구역 등 배후도시 1,200만평
- 3단계로 조성
 - 1단계 : 2004-2007
 - 2단계 : 2006-2009
 - 3단계 : 2008-2012
- 현재 1단계 중 시범단계(28,000평에 15개 기업 가동중)
본단지(7개업체 입주)

<개성공단 3년>

- 분양기업 39개 사(21개 기업 가동중)
- 관련법규(15개 하위 규정, 33개 세부준칙 합의, 추가로 27개 준칙 협의중) 제정으로 법제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 진입
- 2006년 5월 기공식, 2007년 7월 준공된 연면적 2만 8,000여평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기업(32개실) 모집 마감(기숙사 71실, 물류창고, 연구시설, 제품전시장, 교육훈련실 등) --> 입주계약 완료.
-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2007년 2월 현재)
 - (북측) 공사현장 근로자 포함 총 11,342명
 - (남측) 상근자 727명
 - (1단계 100만평 공장용지에 약 300여개 기업이 입주할 경우) 7-10만명의 근로자 소요 예상
- 기업경영 현황
 - (생산 현황) 1억 61만 미달러(2005.01-2007.1)
 - (반출 현황) 8천 4백만 미달러(2005.01-2006.12)
 - (수출 현황) 2천 1백만 미달러(2005.01-2006.12)⁸⁾
- 개성공단 출입현황
 - (인원) 2005년 81,747명(289명/일)
 - 2006년 119,105명(407명/일)
 - (차량) 2005년 38,825대(137대/일)
 - 2006년 59,611명(203대/일)

8) 중동, 러시아(로만손 시계), 호주(연료필터), 중국, 멕시코 등

<노무관리>

- 경영, 노무, 인사관리 이원체제 시행으로 자율성 훼손 --> 경영은 남측, 노무 인사관리는 북한에서 실시
- 북한 노력알선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형식의 현 고용 채용방식에 따라 양질의 인력공급과 고용의 자율성 미확보
-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북한 근로자 출퇴근으로 숙소 미해결로 생산성 하락 우려

<생산관리>

- 낮은 생산성(40-60%)⁹⁾
-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직불 불이행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우려와 국제기구에서의 문제제기(인권문제화)
- 성과급관련 도급식 노동정량제 요구

<간접비>

- 과도한 기업 간접비용(일방적인 보험사 지정으로 무리한 보험료 요구 등)으로 인건비 부담 상승 압박
- 북한노력알선기관(북한측 관리위원회 경유)에 노력알선료 별도 부담

<직접비>

- 최저임금 가이드 라인(월 50미달러) + 사회보험료 최저임금의 15%(7.5미달러) 총 57.5미달러의 인상 요구(*월 최저 노임인상을 합의한 연 5%가 아니라 15%이내)
- 노동시간 : 주 48시간(명절일, 공휴일 보장)
- 연장근로 수당 : 기준 노임의 50% 지급
- 공휴일 근로 : 기준 노임의 100% 지급

< 표 1 > 개성, 중국한국 공단 비교

구 분	단위	개성(A)	중국(B)	한국(C)	중국대비(A/B)	한국대비(A/C)
월 최저임금	달러	50	99.28	642	0.50	0.08
주당법정근로시간	시간	48	40	444	1.2	1.1
기업소득세	%	10-14	15	23-28	-	-
평당분양가	원	149,000	480,000(주1)	407,550(주2)	0.31	0.37

주1) 청도경제기술개발구

주2) 국가산업단지(반월시화, 원주, 군산, 구미, 울산, 광주, 창원) 분양가(195,000-620,000)

자료 : 통일부(<http://www.unikorera.go.kr>)

9) 이는 남한 근로자들과 비교한 수준으로서 본인이 개성공단 현장 방문을 통하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획득한 사실임

< 표 2 > 임금 수준 비교(2003)

(단위 : 미달러)

국가(도시)	임금수준	국가(도시)	임금수준
북한(개성)	57.5	필리핀(마닐라)	96-170
중국(북경)	79-139	베트남(하노이)	79-119
중국(대련)	96-129	인도네시아(자카르타)	81-143

자료 : 일본 JETRO

<유통관리>

- 3통(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통행, 통신, 통관)의 자율성 미흡
- 세계화시대에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여 비효율적인 기업활동
- 통신 303회선을 10,000회선으로 확대하는데 통신주권을 내세워 북한측 주장 고집 지속

IV.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

1. 국제협력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대 강국과 국제기구의 협력사항
- 북한의 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국제기구 가입) 유도 및 지지
- 북한의 WTO가입 지원(지구상 사회주의국가 중 쿠바, 베트남, 중국은 이미 가입)
- 북한 생산품의 해외수출 제한 조치 해제(미국의 적성국 및 국제테러지원국에서의 해제 등)
- 남북한 협력사업에 의한 생산품(역외 가공으로 인정)을 한국산으로 인정 (한-미FTA)
-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대북 반출입 자유 허용
 - *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적용 배제

2. 북한 당국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

- 계획경제시스템에서 시장경제시스템으로 과감한 전환 시도 : 개혁·개방 수용 (보다 적극적인 신 「7.1경제조치」 실시)
- 비즈니스일꾼(경제마인드를 갖춘 비즈니스맨)의 대량 양성 (한국무역협회산하 무역아카데미의 각종 교육서비스 software와 시설hardware을 이용)

- 내부 성장동력(자본, 기술, 경영 노하우 등)의 부족을 외국에서 보충함(낙후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개선)(체제전환국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 남북경협 4대 합의서를 즉각 실행(상사중재, 청산결제 등)
- 남북경협활성화에 필수적인 3통문제(통행, 통신, 통관)를 즉각 해결
- 현재 유일한 경쟁력이 있는 생산요소인 노동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 실시(노동시장의 경쟁성 도입, 기업주의 노무관리 유연성 허용, 임금 직불 허용, 인센티브를 허용 등)
- 노동 이외의 경쟁력이 있는 생산요소를 발굴(IT기술 등)
- 남한과 약속한 모든 합의서를 즉각 이행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성을 회복

3. 남한 당국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

- 정부의 대북한정책에 있어서 투명성, 일관성, 효율성, 순수성 제고
(대북한정책의 정치적 이용 금지)
- 인도적 차원의 무상지원의 경우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 구해야 함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경제적인 다른 조치로 대가를 치루도록 함 => (피주기 논란 재발 금지)(전국민적 지지 획득)
- 일시적인 무상지원을 지양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함
(매년 쌀 50만톤(운송비 포함 2,300여억원어치)과 비료 35만톤(1,400억원어치) 지원하기 보다 농정기술과 비료공장을 건설지원)
- 남북경협 추진 국내기업에게 특혜(세제, 금융, 보험) 제공
(스스로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경제협력하는 것이지만, 리스크를 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

4. 남북한기업 동시적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

- 비교우위에 입각(유무상통)한 경제협력 사업 착수
 - 자원이 부족하여 외국에서 수입이 불가피한 남한의 현실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으나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여 개발이 저조한 북한의 자원개발수입
 - 북한의 자원을 착취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함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과 고려하되 가공단체를 거쳐 북한에게도 부가가치를 높여 줌
 - 자원지향형, 제조지향형 대북투자 중심으로 추진

○ IT분야 협력¹⁰⁾

- 남북한 IT인력 활용하여 IT제품 개발 해외 수출(애니메이션, 게임산업 등)
- 성공모델(하나비즈닷컴)을 다변화 함
- 개성공단내 제2-3단계 분양시에는 IT협력기업을 입주시킴
-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물자반출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은 인터넷망을 연결해야 함)

○ 관광사업협력¹¹⁾

- 가장 성공가능성이 큰 협력사업임
- 설악산-(향로봉)-금강산관광 벨트 조성
- 왕조유적지(경주-부여-서울-개성-평양)벨트 조성
- 동해(부산-속초-원산-나산-나훗가-블라디보스토크-니카타-고베-대마도-부산)쿠르즈관광벨트 조성(서해 쿠르즈관광 벤치마킹)

○ 개성공단 생산품의 해외수출활성화

- 한-미FTA에서의 개성공단제품에 대해 한국산 인정 요구는 협상용에 국한시킴
- 미국-요르단 FTA에서의 역외가공인정 사례를 비추어 보면 이는 북핵문제 해결이 관건임
- 개성공단제품의 공동 브랜드화 추진(Made in Gaesung¹²⁾ 추진)
- 개성공단내 상설 판매장과 정기적인 국제무역전시회 개최
- 개성관광과 연계
- 개성의 '평화도시' (중립지역)화 선언

○ 쌍무적 남북경협 (북한의 대남투자) 착수

- 남한의 일방적인 투자차원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함
- 북한의 대남한 투자협력 시작(북한의 자본, 기술, 노동, 원료 투입)
- 가장 투자비용이 적고, 위험이 작고, 수익성이 큰 사업은 식당(랭면)임

○ 북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서비스 협력)

- 시장경제교육(KDI), IT기술교육, 전자무역(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 현장 교육(평양-개성-남한 공장견학-북한)

10)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남성욱,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과 강성대국 건설」, 한울아카데미, 2002 참조

11) 이에 대한 실무적인 구체적인 대안제시는 조항원, "남북관광평가와 활성화 방안", 남북경협시민연대 보도자료(2007.02.13), 북핵합의와 남북경협관련 토론회 2007.03.22

12) 이에 대해서는 윤기관, "메이드 인 개성 활성화하려면", 경향신문, 2007.02.20, 27면

- 남북경협 수익성 성공모델의 다변화
 - 제2의 개성공단 조성
 - 개성공단내 성공모델 다변화(제2의 신원 탄생)
- 남북 농업부문 경쟁력 제고
 - 중국산 제품의 범람을 북한산으로 대체화 전략
북한산 농수산물의 남한 반입쿼터량 확대 조절
 - 북한내 농기계 생산과 수리공장 건설, 북한 비료공장 건설, 영농 기술자 양성 교육, 남북공동연농단지 운영
 - 2014년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남북협력 신품종, 고품질 쌀 개발
 - 남한 농업구조조정차원에서 철원근교에 대규모 화훼단지 조성
- Buy-back거래 방식 도입
 - 북한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대금결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
 - 양말(라면, 치약, 칫솔, 비료, 농약 등)제조기를 북한에 수출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그 공장에서 생산한 양말로 받음

V. 개성공단제품의 해외시장 진입 활성화 방안

1. 개성공단제품의 안정적 해외판로 단기전략

-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가 보장되어야 현재의 시범사업에서 본단계(제1-3단계)까지 추진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제품중 일부는 국내 수요로 충당이 가능한 분야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해외시장을 겨냥하지 않으면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가 어려운 분야임
-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내부적인 과제들도 많이 있지만 원산지문제 등 외부적인 과제들이 더 심각함
- 자본도 시설도 원자재도 한국산이고, 다만 생산공장이 북한땅(개성)에 있고 근로자가 북한사람일 뿐인데, 'Made in Korea'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 원산지규정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WTO/DDA협상은 속히 재개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는 전세계 국가수만큼 다른 원산지규정을 충족시켜야만 해당국에

수출할 수가 있음. 그러나 우리 나라는 200여개의 수출대상국 원산지규정을 모두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 중요한 수출대상국의 규정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이행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봄을 이루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개성제품의 한국산화 인정을 포함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 싱가포르와 ASEAN와의 FTA체결에서는 이를 수용한 바 있음.
- 또한, 개성공단 현지에 상설판매장을 설치하여 방문자들에게 판매하여야 함. 그러면, 개성공단 제품의 홍보면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판매고도 제고시킬 수 있음. 개성관광을 준비하고 있는 이즈음 하루 속히 시행해야 할 사안임.
- 이 때, 방문자들의 구매물품에 대하여 남한으로의 반입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됨. 한국인이 외국 방문 후 귀국할 때 방문자 1인당 미화 400달러(술 1병, 담배 2 보루)로 제한하고 있어 그 이상을 소지하고 들어오면 간이세율로 수입관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개성 등 북한지역을 방문하고 귀환할 때에는 휴대품의 양을 규제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정 이상을 휴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이므로 제한할 수가 없음.

2. 개성공단제품의 안정적 해외판로 장기전략

- 개성공단제품의 안정적인 해외판로시장 확보를 위한 장기전략을 원산지표시의 4가지 표시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함.

<Made in Korea>

우리나라가 가장 희망하는 표시방법이며, 상대국의 원산지규정에 맞춰 이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FTA협상에서도 반드시 이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음.

<Made in D.P.R.Korea>

- 북한제품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표시는 아직은 시기상조임(단지, 국내 소비용만 가능함).
- 그러나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 이후 북한이 자국 경제를 외국에 개방하고, 실질적인 내부개혁이 이루어지고, 국제사회의 지지에 의해 북한의 신뢰성이 제고되면 이 방식도 가능하게 될 것임.

《Made in Korea(Gaesung) 혹은 Made in D.P.R.Korea(Gaesung)》

- 이 표시방법은 제조국보다 제조지역을 강조하는 방법임. 개성에서 제조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임. 이것이 허용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첫째, 개성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공동 브랜드를 달자.

- 해외에 나가 보면, 삼성제품의 광고판에는 단지 “SAMSUNG”이라고만 쓰여 있음. 이 브랜드만 가지고 모든 삼성제품을 대변하고 있음. 피에르가르맹은 옷, 넥타이, 손수건, 가방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름(브랜드)값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임.
-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가격, 품질, 디자인, 애프터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국제적인 신뢰성을 얻어 ‘개성’ (‘Gaesung’)이라는 브랜드만 가지고 국내외 판로시장을 확보하도록 하자.

둘째, 개성에서 무역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자.

- 무역전시회는 과학적인 수출마케팅수단임. 우리나라 산업자원부는 지금 세계적으로 브랜드있는 무역전시회 10개를 육성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 북한에는 평양국제무역전시회가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남북이 합동으로 2007 하반기 평양국제무역전시회를 개성에서 개최하자. 합동주최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우수한 무역전시주최자(organizer)도 많이 있고, **“한국무역전시학회”**도 있음.

셋째, 개성을 ‘세계적인 평화도시’ 로 선언하자.

- 세계적으로 볼 때, 안보상 가장 불안 지역이 중동임. 그러나 북핵위기 이후 한반도가 제2의 안보불안지역이 되어 버렸음.
-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리고 싶어도 북핵문제 때문에 주저하고 있음. 6자회담의 타결로 일단 큰 걸림돌은 제거되었다지만, 핵불능화와 핵확산금지 등 갈 길은 아직 험난함. 그러므로 북핵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개성에서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평화의 상징도시화 하자.
- “百聞이 不如一見” 이다. 더글러스 앤더슨(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전문위원), 미 대사관 서기관급 직원 2명의 개성방문(2006년 3월 20일)에 이어 평화도시선언에 도움이 될 만한 더 많은 외국인(미국, 일본, EU 대사관 전직원들, UN 등 국제기구 직원들)이 개성을 방문하게 하자.

- 북한에 대하여 강성기조를 띠고 있는 윌리엄 페리(전 미국 국방부장관)의 개성방문을 환영하자.

넷째, 북한이 WTO에 가입하도록 돕자.

- UN가입 국가중 우리 아직 미수교의 상태로 남아있는 국가는 쿠바, 북한 등 5개국임. 지구상에 아직 공산국가로 남아있는 나라는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 라오스 등임.
- 그러한 쿠바도 1995년에 WTO에 가입하였음. 북한이 WTO에 가입하도록 북한경제를 더욱 꾸준히 개방시키자. 북한 국민이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더 돕자.

VI.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관련국들의 자세

1. 미국 당국에 대한 메시지

- 국제협약에 합의한 이후 자국이익(개성공단관련 노동 및 환경기준합의 내용이 ILO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자국 대표자들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합의를 무효로 하고 다시하자는 주장은 국제지도국으로서 적절치 못한 비신사적인 행위 ==> 이러한 경우 미국의회는 합의서를 비준 거부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정당한 방법을 공단 관련 부속서에 “북한 여타지역의 임금, 노동 환경 등을 참고한다” 는 내용에 대해 미국 의회가 ILO의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었음 ==> 북한은 ILO 미가입국이므로 적용할 수도 없었음.
- 지나친 일방주의, 패권주의는 제2의 「9.11」 사태를 야기할 있음으로 자유무역주의, 상호주의, 공정무역, 민주주의, 인권존엄을 앞세운 미국 1극 체제의 추진은 지양하여야 함

2. 북한 당국에 대한 메시지

- 개성공단 1단계 완료시(2008년) 약 300여개 기업에서 필요한 근로자가 약 8-10만명 예상 ==> 2007년 가을부터 개성시를 비롯한 인근지역의 양질의 인력공급 한계에 직면 예상 ==> 인력수급대책과 먼지역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문제해결 시급(북한측에서는 공단 밖에 건설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공단내에 건설 시급함

-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이 현재는 57.5달러이지만 노동생산성이 오르면 그에 따라 임금도 오름 ==> 앞으로 5년 후(2012년) 개성공단사업이 완성되는 해 개성공단 근로자는 약 3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 그 때 임금이 100달러로 오른다면, 북한의 외화벌이 이는 3.5억달러 ==>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조성되면 10억달러 이상의 외화벌이 ==> 북한 1년 수출액의 50%에 해당 ==> 북한경제는 도약의 계기 마련 ==> 북한국민 생활 수준이 수직 상승 전망 ==> 그래서 제2의 성공기업(제2의 신원)과 제2의 성공공단(제2의 개성공단)이 탄생되어야 함 ==> 공업단지, 축산업단지(소, 돼지 사육단지), 화훼단지(철원근교), 교육단지(평양과학기술대학)등을 추가로 건설 바람직함.

3. 한국의 의무 사항

1) 중소기업의 의무 사항

- 개성공단사업은 단순히 중소기업들의 당면과제(노동집약산업으로 한 인건비 부담 해소)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경제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안보적 차원도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깊이 인식할 필요 있음 ==> 따라서 지나친 성과주의나 이익창출 기대 지양
-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단기적 이익창출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창출을 기대하여야 함
-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 향상 자구 노력이 필수적임
-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의 국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입소문마케팅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쟁력(가격, 품질, 디자인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2) 소비자의 의무 사항

- 개성공단제품(Made in D.P.R.K(Gaesusng))에 대하여 한국산과 동일하다는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함 ==> 북한산이 아니라 개성산(Made in Gaesusng)임에 자부심을 가져야 함
- 개성공단의 함의를 깊이 숙지하여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기업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소비 증가

3) 정부의 의무 사항

-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간의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운영권 확보경쟁 등 정부내 불협화음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함 ==> 정부 각 부처간 업무분장에 따라 각자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하여 부처이기주의를 표출해서는 안 됨 ==> 나아가 정부규제 완화와 기업의 자율권 확대 추진 요함

-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성공단에서 생산제품에 대해 공동브랜드화 해야 함¹³⁾ (벤치마킹 대상 브랜드 : 메독지방산 포도주, 피에르가르뎡) => 개성상인의 현대적 조명을 통하여 개성을 국제무역도시화함(개성공단내 생산품의 상설판매장 설치¹⁴⁾,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중 국제무역전시회장을 이용한 정기 국제무역전시회 개최, 개성관광과 연계, 조선왕조 탐방(경주->백제->서울->개성->평양연계상품 개발) ==> 개성을 국제평화의 상징도시화함(국제평화포럼 개최, 국제평화 관련 국제회의 개최) ==> 한국의 대표 도시화 함(미국대표도시 : 뉴욕, 시카고, 보스톤, L.A, 실리콘벨리 등)

VII. 결론 : 지방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전망

1. 단기적 효과와 전망

1) 일방적인 대북한 투자로 남북경협외 한계에 직면

- 현재 남한의 일방적인 대북한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금강산관광사업(현대아산의 자본과 시설투자 vs 북한의 자연경과 제공)
- 개성공단사업(개별기업의 시범 사업추진중이며, 아직 투자단계)
- 평양 등 단독투자 기업들은 대부분 실패로 철수중

2) 남북경협활성화의 지방경제에 미치는 효과 미미

- 북한의 노동자, 기술, 자원을 남한 지방기업이 활용할 수도 없음
- 남한 지방기업의 대북투자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님
- 중국에 비하여 북한에서 값싸게 제조된 대량의 물품 반입으로 지방소비자들의 소비절감도 없음

3) 개성공단 입주 지방 본사 기업의 생산성 미흡

- 개성공단 입주기업(시범 및 1차단지)들은 북한 노동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동지향적 사업인 바, 북한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아직 남한 노동자의 30% 내외에 머물고 있음
-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인사권이 없어 생산성 제고에 한계에 직면함

13) 이것을 소위 지역브랜드마케팅(Region Brand Marketing)이라고 함

14) 한국관광공사는 시계(로만손사 제품), 신발류(삼덕통상 제품) 등 개성공단생산품을 개성공단이 아닌 북한 온정각 휴게소 동관 300평규모의 대형 면세점인 금강산 면세점(2007년 4월 개점 예정)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함. 현재까지는 현대아산이 금강산 해금강 호텔과 온정각 휴게소내에 소규모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음

2. 장기적 효과와 전망

1) 북한 부존자원의 국내 기업이용

- 북한의 유연탄,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비용과 물류비용면에서 크게 기대
- 현재는 중국이 주요 광산을 매점매석한 상태임

2)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물류비용 절감 가능

- 경의선과 경원선이 개통된다면 수출기업들의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음
- 시베리아철도(SLB)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용 크게 절감 가능

3) 가격경쟁력 향상 가능

- 북한의 노동자, 자원을 북한에서나 남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생산비(가격)면에서 크게 절감 가능
- 북한의 IT, 애니메이션, 문화예술면에서의 남북협력이 크게 기대됨

<참고문헌>

1. 남성욱(2002),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과 강성대국 건설」, 한울아카데미.
2. 윤기관(2003), “남북한 경협 성공조건과 실천방안 : 경제-무역적 접근”, 「북한 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
3. 윤기관(1999), 「남북한 무역경제연구」, 충남대학교 출판부.
4. 윤기관(2007), “메이드 인 개성 활성화하려면”, 경향신문.
5. 조항원(2007), “남북관광평가와 활성화 방안”, 남북경협시민연대 보도자료(2007. 02. 13), 북핵합의와 남북경협관련 토론회.
6. 최수영(2005), “남북경협의 바람직한 모델과 개성공단”, 국회 북한-통일 모임, 「변화하는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7. 통일부(2007), 「개성공단 길라잡이」.
8. 황병덕(1998),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 동서독, 중-대만, 남-북한」, 민족통일연구원.

[첨부 자료]

북한법 : <북남경제협력법>

제1조(사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은 남측과의 경제협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 북남경제협력에는 북과 남 사이에 진행되는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와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적용대상) = 이 법은 남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북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남측의 법인, 개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북남경제협력원칙) = 북남경제협력은 전 민족의 리익을 앞세우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호상존중과 신뢰,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진행한다.

제5조(지도기관) = 북남경제협력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한다.

제6조(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임무) =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북남경제협력계획안의 작성
2. 북남경제협력신청서의 접수 및 승인
3.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합의서, 계약서의 검토
4. 북남경제협력에 필요한 로력의 보장
5. 북측지역에 있는 남측당사자와의 사업
6. 남측당사자의 북측지역 출입방조
7. 북남경제협력물자의 반출입 승인
8. 북남당사자 사이의 연계보장
9. 북측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10. 이밖에 정부가 위임하는 사업

제7조(협력사업의 기초, 방법) = 북남경제협력은 당국 사이의 합의와 해당 법규, 그에 따르는 북남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기초하여 직접거래의 방법으로 한다.

제8조(협력금지대상) =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 민족의 미풍양속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의 북남경제협력은 금지한다.

제9조(협력장소) = 북남경제협력은 북측 또는 남측지역에서 한다.
합의에 따라제3국에서도 북남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

제10조(북남경제협력의 승인) = 북남경제협력에 대한 승인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한다. 승인없이 북남경제협력을 할 수 없다.

제11조(협력신청서의 제출) = 북남경제협력을 하려는 북측 또는 남측 당사자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에 해당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남측 당사자는 공중기관이 발급한 신용담보문서를 함께 내야 한다. 신청서의 양식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정한다.

제12조(신청서의 검토처리) =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받은날부터 20일 안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승인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낸다.

제13조(출입증명서의 지참) = 북남경제협력의 당사자는 남측 또는 북측지역에출입할 경우 북남 당국 사이의 합의에 따르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송수단에도 정해진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제14조(검사, 검역) = 북남 경제협력 당사자 또는 해당 수송수단은 출입지점이나 정해진 장소에서 통행검사, 세관검사, 위생검역 같은 검사와 검역을 받아야 한다. 북남 당국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 검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5조(남측당사자의 체류, 거주) = 북남경제협력을 하는 남측당사자는 출입사업기관의 승인을 받고 북측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공업지구와 관광지구에서의 체류, 거주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6조(재산리용, 보호) = 북남당사자는 경제협력에 화폐재산, 현물재산, 지적재산 같은 것을 리용할 수 있다. 투자재산은 북남투자보호합의서에 따라 보호된다.

제17조(로력채용) = 북측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남측당사자는 필요한 로력을북

측의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남측 또는 제3국의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반출입승인) = 북남경제협력물자의 반출입승인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한다. 공업지구, 관광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제19조(관세) = 북남경제협력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공업지구와 관광지구에 들어온 물자를 그대로 북측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세금납부, 동산 및 부동산리용, 보험가입) = 북측지역에서 남측당사자의 세금납부, 동산 및 부동산리용, 보험가입은 해당법규에 따른다. 북남 당국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결제은행, 결제방식) =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결제업무는 정해진 은행이 한다.

결제방식은 북남당국사이의 합의에 따른다.

제22조(사고에 대한 구조)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북측 지역에서 남측당사자 또는 그 수송수단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때에 구조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북남경제협력사업내용의 비공개) =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사업내용은 상대측 당사자와 합의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24조(사업조건 보장) = 해당 기관은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사업조건을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감독통제) = 북남경제협력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북남경제협력질서를 정확히 지키도록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26조(제재) =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사업중지, 벌금부과 같은 행정적 책임을 지운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수도 있다.

제27조(분쟁해결) =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 해결절차로 해결할 수도 있다.

남한법 :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성공업지구"라 함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어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어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출입" 또는 "체류"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정부의 시책 등)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지구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환경 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이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다.

⑤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개성공업지구내 입주기업의 유치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

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 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단서, 제29조,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④ 통일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정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제2항의 기반시설에 지원된 비용을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통일부 장관은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개발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⑥ 제1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지원, 시설부담금 납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지원)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현지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

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의 사업자로 본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 등으로 하여금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남북협력기금법 8조 3호 “교역 및 경제분야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 형식상 공단 입주기업은 북측 법인

* 개성공단내 담보취득 및 실행을 위해 남측의 부동산등기법 및 민사집행법과 유사한 부동산등록준칙·부동산집행준칙이 자체적으로 제정되어 있음

제12조(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출입·체류자의 보호

제13조(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남한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②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를 제1항 각호의 법률이 정하는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로 본다.

③제1항 각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은 국내에서 근로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 각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동부장관·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그밖에 제1항 각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료기관 등) ①「의료법」 제30조 제2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남한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어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으로 본다.

②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③제1항에 따라서 설립된 의료기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 중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게 해당하는 자에게 「의료급여법」 제7조에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인정,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①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②제1항 각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 등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그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도 남측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보호가 통상 이루어지고, 국제수준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하여 남측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 필요

제4장 조세, 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조세 특례)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 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왕래와 교역의 특례) ① 개성공업지구의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6장 제3절, 제9장 제1절 및 제2절을 준용하되, 민족내부거래의 원칙을 반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개성공업지구의 왕래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개성공업지구를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간소화를 위한 특례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8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①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

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9조(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2.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감독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④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2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⑥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그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제1항의 공무원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의 청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는 법 시행과 더불어 청산되며, 청산법인의 권리·의무는 제19조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개성공단사업 통계자료>2007년 3월 31 현재(통일부)

1. 개성공단 생산·수출 현황(05-07.3)

□ 생산현황

단위 : USD 1,000

구 분	섬유	화학	금속기계	전기·전자	합계	
'05년	1월	-	-	201	-	201
	2월	30	-	92	-	122
	3월	130	-	52	-	182
	4월	201	-	135	-	336
	5월	297	36	108	-	441
	6월	318	40	79	-	437
	7월	390	87	298	-	775
	8월	594	123	407	69	1,193
	9월	964	235	697	155	2,051
	10월	1,176	350	1,091	227	2,844
	11월	1,279	417	979	267	2,942
	12월	1,401	480	1,111	390	3,382
'06년	1월	1,569	461	1,002	364	3,396
	2월	1,965	373	986	468	3,792
	3월	2,813	411	1,338	647	5,209
	4월	2,002	448	1,243	657	4,350
	5월	2,113	458	1,519	1,053	5,143
	6월	1,897	957	1,464	1,190	5,508
	7월	1,643	885	1,924	1,063	5,515
	8월	1,936	1,240	2,164	1,471	6,811
	9월	2,416	1,408	2,163	1,634	7,621
	10월	2,366	1,295	2,080	1,814	7,555
	11월	3,109	1,508	2,448	1,803	8,868
	12월	3,964	1,456	2,522	2,027	9,969
'07년	1월	5,531	1,473	2,631	2,327	11,962
	2월	4,436	1,369	2,590	1,960	10,355
	3월	6,112	1,751	3,020	2,398	13,281
합계	50,652	17,261	34,344	21,984	124,241	

□ 수출 현황

단위 : USD 1,000

기간	'05	'06.1분기	'06.2분기	'06.3분기	'06.10	'06.11	'06.12	'07.1	'07.2	'07.3	합계
계	866	2,280	3,775	6,642	2,054	2,421	2,494	2,717	2,502	3,161	29,072

2. 북측 근로자 채용 현황

('07.3.31 현재, 단위: 명)

구분	입주 기업	지원기관				공사 인력			
		소계	관리위원회	토지공사	현대아산	소계	중기공장	부지조성 공사	건축공사
합계	9,867	389	131	24	234	2,190	400	1,079	711

* 남측 인원은 입주업체, 관리위, 개발사업자 등 총 773명이 근무

3. 출입 현황

□ 인원 · 차량 출입경 현황

('06.3.31 현재, 편도 기준)

구분	'05	'06	'07.1	'07.2	'07.3	합계
인원	40,874 (144명/일)	59,553 (203명/일)	5,851 (226명/일)	5,223 (261명/일)	6,826 (253명/일)	118,327
차량	19,413 (69대/일)	29,807 (101대/일)	2,755 (107명/일)	2,300 (115대/일)	3,577 (132대/일)	61,429

□ 외국인 출입 현황

(‘07.3.31 현재, 단위: 명)

구분	'05	'06.1분기	'06.2분기	'06.3분기	'06.10	'06.11	'06.12	'07.1	'07.2	'07.3	총계
바이어	5	2	6	2	-	-	7	-	3		25
투자·기술자	14	3	17	11	-	5	1	-	-		51
방문	30	66	201	22	8	42	6	5	41	85	506
총계	49	71	224	35	8	47	14	5	44	85	582

남북경협시민연대가 작성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중 이루어진 상봉과 회담에서는 그동안 남북 정상 및 장관(급)간에 합의한 「정전협정(1953.7.27)」 「7.4남북공동성명(1974.7.4)」,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2.19)와 그 합의서 1,2,3장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2.19)」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9.17)」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5.7)」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5.7)」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5.7)」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문(1992.2.19)」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3.19)」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1990.7.26)」 「6.16남북공동선언(2000.6.15)」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합의(2007.2.13)」 등 수많은 평화체제 관련 조약 및 합의문의 정신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남북정상은 이들 남북합의사항들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 크게 반성하여 새로운 합의를 양산해 나가기 보다는 과거에 이미 합의해 놓은 이 모든 합의사항들이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함에 합의하며, 동시에 이번 남북정상선언이 과거의 합의처럼 또 하나의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따른 제반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방하면서 앞에서 나열한 수많은 남북합의서 중 특히 가장 최근에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남북이 이미 합의한 모든 합의, 조약, 선언 등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남북이 합의한 모든 합의, 조약, 선언들을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7.4남북공동성명(1974.7.4)」을 기념하여 매년 7월 4일에 남북이 함께 기념행사를 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상에 그려져 있는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통일의 그 날까지 인정할 것에 합의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모든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제교류·협력사업과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은 결국 한반도통일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사업임을 인식하여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반도의 통일비용은 물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으로 구분하여 경제교류·협력사업은 통일의 물리적 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은 통일의 사회적 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사업임을 인식할 함께 하였다.

통일의 물리적 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경제교류·협력사업은 결국 북측의 경제 수준을 남측의 경제수준의 반 이상의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하여 향후 통일의 시기에 북측 주민들이 남측으로 대거 이주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북측의 현지에서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하여 통일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따라서 남측이 북측에서 실시하는 경제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북한의 경제기반사항을 남북이 함께 종합적, 구체적으로 평가한 후 남측의 경제기반과 북측의 경제기반을 고려하여 남북의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거대한 자본투자가 소요됨을 인식하여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치밀한 사전 계획이 요구됨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하나, 북측의 경제개발을 위해 소요될 자금을 추정하기 위하여 남북이 협력하여 북의 경제개발 10개년계획(2010-2020)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둘, 장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기본 모델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성공단사업의 시범단지에 대하여 인사, 재무, 판매, 무역, 마케팅, 손익, 자재, 유통, 통관, 통행, 통신 등에 대하여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사업평가를 우선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제1단계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여, 제2단계 실시에 따른 보완사항을 찾아내기로 하였다.

셋, 개성공단의 제2단계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시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경공업단지, 중공업단지, IT단지, 임수산업단지, 문화관광산업단지 등 새로운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들 새로운 사업은 북측의 경제개발 10개년계획에 근거하기로 하였다.

넷, 북으로의 투자는 우선 북측 주민들을 위한 경공업사업에 치중하기로 하였다. 인도주의란 불쌍해서 지원하자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제3국들이 사용하고 있는 바,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북측 민족을 돕는다는 뜻에서 인도주의라는 단어보다는 민족주의 측면에서 북측에게 쌀과 비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민족적인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쌀농법기술을 유상으로 전수하거나 농기계를 대가를 받고 주거나 비료공장을 짓는데 직간접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산을 깎아 만든 다락밭 때문에 작은 물에도 홍수로 변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을 인식하여 무산으로 북의 산에 나무심어 주기, 연탄나누어 주기, 개천바닥 청소

기계 주기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북은 통일의 사회적 비용을 감축하기 해서는 남북주민이 함께 하는 공간을 갖도록 함이 중요함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금강산관광의 경우는 북측에게 국제통화의 축적에는 기여하였지만 사실상 통일의 사회적비용을 감축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를 못했음을 인식하여 이제부터는 금강산관광에도 북한 주민의 관광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의 평가를 고려하여 백두산관광에서는 처음부터 통일의 사회적 비용 축소차원에서 새롭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통일의 사회적비용은 물론이고, 물리적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진정한 관광사업은 곧 개성지역을 세계적인 문화관광지역으로 육성하는 개성문화관광사업임에 인식을 같이하여 개성지역 전체를 국제평화도시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평화관광문화지역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개성지역에서는 「봄가을문화축제」, 「금산인삼축제와 연계한 세계인삼축제」, 「개성공단제품 해외수출활성화를 위한 국제무역전시회」, 「5일장 개설」 등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협력사업보다는 민족주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재외동포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 회의를 금년 12월 남측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후 2월 중 서울에서 열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우선 남측 정상 두 번 방북한 것에 대한 답방으로 북측 정상이 내년에 1회 내 후년에 1회를 방남한 후 내 후년부터는 남북정상들이 교차적으로 수시로 만나 현안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남북경협시민연대

The Citizen's Solidarity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남북협력기금 관련 국민감사청구 및 환수조치 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보도자료: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 취지문

감사청구 이유 : 국민혈세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더 이상
낭비 말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인도적인 지원과 경제협력이 정부의 주장대로 평화를 담보할 수 있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투자이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게다가 향후 통일비용 관련 ‘한민족공동체’ 건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누가 평화와 화해를 위해 같은 민족을 돕는 것을 싫어하거나 띄우기 지원이라고 반대하겠는가?

우리 ‘남북경협시민연대’는 1999년부터 남북경협 관련한 순수한 비정치적 시민단체(NGO)로써 지금까지 8년 넘게 활동하면서 해마다 예산국회에서 협력기금증액 관계로 여야가 대립할 때, 기금증액에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위와 같은 긍정적인 목적에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된다면 이 기금증액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6년 (1991-2006년) 동안 사용된 남북협력기금 총 4조 1,253억원중 94.2%인 3조 8,845억원이 통일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돼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노무현 정부의 ‘묻지마기금’ 집행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이번에 제1차로 5건(백두산관광지

원, 금강산평화체험연수 보조금지원, 정촌흑연광산투자, 개성공단관리기
관운영비 대출 및 중유지원용 선박용선료) 기금집행에 대한 유용·전용·
낭비·변칙 및 부실지원 여부와 관련하여 국민감사 청구 및 환수 조치 청
구를 한다.!

이 번에 최초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및 환수조치 청
구를 계기로 협력기금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
적 판단에 따라 기금운용의 신뢰성을 훼손하여 남남갈등과 분열을 조장
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북한의 일방적 요구에 ‘묻지마지원’으
로 기금 운용 관련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남
북당국과 관련 기업들에게 촉구하면서 향후 제2차 국민감사 청구 및 환
수 조치 신청을 고려하게 될 것임을 밝힌다.

감사청구사항 :

○ 백두산관광사업

백두산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차 원자재 피치(Pitch) 무상지
원(2005년) 약 48억원과 2차로 원자재 약 50억원(2006년)을 지원하였
으나, 1차 지원과정에서 부실공사 등의 이유로 몇 십억 원을 허공에 날
린 사실을 정부도 일부(금액)를 시인함.

2차 지원시 정부가 주장한 합의사항 내용이 사실일 경우 북측이 합의
한 현장 감사 및 시범관광 이행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약 총98억원의
원자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시 통일부가 정치논리로 시민단
체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합의 없이 엠바고까지 요청하면
서 서둘러 1-2차 묻지마 지원을 하여 약 98억원의 원자재가 잘 못 쓰
여져 감사청구를 ! 하게 되었다.

○ 금강산 통일체험연수 보조금

금강산 통일체험연수 보조금이 2005년 12월 22일부터 2006년 3월 8
일까지 약 62억 8천만원 예산으로 17,000명(계획된 숫자)의 교사와 학
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계획 되었다. 그런데 비수기인데다 준비부
족과 졸속연수 추진으로 총 16,294명 대상중 학생은 1,815에 불과하고,
교사가 13,986명이며 그리고 일반인 493명을 포함시켜 실시하여 기금
을 변칙 집행했다.

보조금지원이 해당이 되지 않은 일반인들에 대한 지원기금을 환수 조

치해야 한다. 금강산 통일 체험연수가 일반인까지 포함시켜 비수기에 실시하는 것은 체험연수 명분으로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데 혈세를 변칙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체험연수는 취지대로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개성공단관리기관 변칙지원과 변칙사용

개성공단지원법 시행 이전까지 매년 약 100억원(약 총360억원, 234억원 공장관련 비용 제외)을 북측 법인인 관리기관의 운영비에 협력기금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남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지난 3년 동안 90% 적자운영 중인데 3명의 임원연봉이 4억원이 넘어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협력기금 변칙지원과 혈세낭비라는 국민적인 여론에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비상근인 감사를 통일부 퇴직자를 상근으로 임명하여 연봉 약 1억 3천만원을 지불하고 있어 혈세낭비 여부를 감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정촌흑연광산 개발 관련 투자

정촌흑연광산 개발 관련 투자는 2004년부터 약 62억원으로 현물투자 형식으로 북한에서 생산한 광물자원(흑연)을 최초로 지난 해 반입한다고 광업진흥공사는 요란스럽게 과잉홍보 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흑연이 반입됐다는 소식이 없다.

남북경협시민연대는 시민단체로서 사업 시작 때부터 비경제논리로 추진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지원한 현물(장비 및 시설)이 현지에 있는 지를 확인할 것과 현물구매과정에서 기금이 잘못 쓰여졌는 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 중유지원용 선박 위약금 처리문제

지난 3월 북한의 핵합의이행을 지켜보지 않고 중유 지원용 선박부터 계약했다가 위약금으로 36억원의 혈세를 날린 실책에 대한 문책과 환수 조치를 청구한다.

* 국민감사청구인 연명부 첨부

2007. 10. 22

남북경협시민연대